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매뉴얼

2026. 9.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목 차

I. 개요	1
--------------	----------

II. 자주 묻는 질문(FAQ)	3
--------------------------	----------

1. 신청 주체	3
2. 신청 방법	7
3. 제출 서류	9
4. 신청 결과 문의	11
5. 기타 문의	13

III. 불임자료	14
------------------	-----------

1. 피해자 인정 신청서	14
2. 피해상황기술서	17
3. 위임장	18
4. 국세청 매출액 자료 조회 방법	19
5. 사업장 운영자 경제적 피해 증빙(예시)	21
6. 매출액 자료 불인정 유형(예시)	24
7. 근로 활동자 경제적 피해 증빙(예시)	26

I. 피해자 인정 신청 개요

□ 피해자 신청

○ (신청 기간) '28. 3. 16. 까지

※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중복 가능)

- ①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③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신청 서류)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붙임1**), 관련 증빙 서류(각 붙임 문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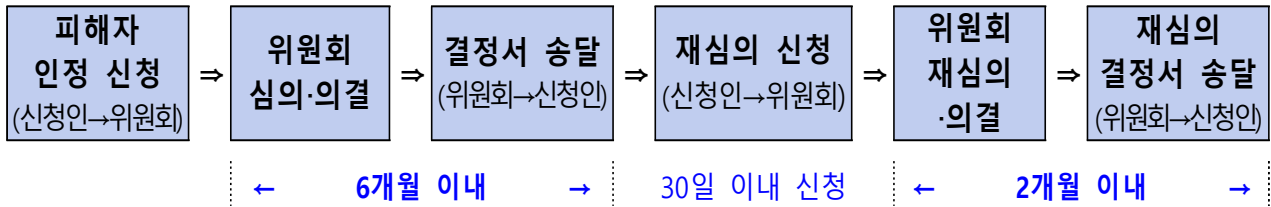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URL주소 : <https://1029itaewondisaster.go.kr>)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 장소 및 연락처 〉

- ▶(직접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안내동 1층 내 민원실
※ 월~금 09:30~17:30(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 ▶(FAX) 02-2100-4053 ▶ (이메일) itwsupport@korea.kr
- ▶(문의전화) 02-2100-4043, 4057

□ 결정 등 처리 절차



- 법 제5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신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송달)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 가능(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 기간 제외)
- 모든 처리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함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으로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할 시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 근거 규정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53조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0427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4호, 2026. 2. 10., 일부개정]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53조(재심의) ① 제52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피해자 인정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제18조(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하 생략)

Ⅱ.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청 주체

①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중복 가능)

- ①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③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2)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3)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② 피해자 유형별로 지원이 다른가요?

※ 지원내용(p6 참고):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정신질환등 검사치료 지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치유휴직

- 피해자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피해자 유형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피해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가령, 신체적·정신적 피해 유형으로 인정받아야만 의료비 지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신청인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1명의 신청인이 여러 유형의 피해를 인정받아도 지원은 동일합니다.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주요 내용(p6 참고)

③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신청은 가능한가요?

- 신청자 “본인이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거나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다만,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URL주소 : <https://mois.go.kr/frt/sub/a06/b13/applyltaewon01/screen.do>

④ 사업장이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 주체는 누가 되나요?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피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 주체는 명의자 모두가 가능합니다.
- 또한, 신청 후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는다면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사업장의 공동명의자 중 1인(사업장 지분이 50%인 경우)만 신청하여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은 50%만 받나요?

- 피해자 지원은 사업장 공동명의자의 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공동명의자 각각 신청 후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는다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생활지원금 (法제57조, 令제22조)	○ (목적)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기준) 가구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 1회, 일시 지급 (단위: 원) <table><tr><th>구분</th><th>1인 가구</th><th>2인 가구</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h>5인 가구</th><th>6인 가구</th><th>7인 이상</th></tr><tr><td>피해자</td><td>730,500</td><td>1,205,000</td><td>1,541,700</td><td>1,872,700</td><td>2,186,500</td><td>2,485,400</td><td>2,775,100</td></tr><tr><td>희생자</td><td>1,461,000</td><td>2,410,000</td><td>3,083,400</td><td>3,745,400</td><td>4,373,000</td><td>4,970,800</td><td>5,550,200</td></tr></table>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피해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2,775,100	희생자	1,461,000	2,410,000	3,083,400	3,745,400	4,373,000	4,970,800	5,550,20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피해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2,775,100																		
희생자	1,461,000	2,410,000	3,083,400	3,745,400	4,373,000	4,970,800	5,550,200																		
의료지원금 (法제57조, 令제23조)	○ (신청)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25.6.9. ~ '28.3.16.) ○ (목적)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보조장구 사용 비용 지원 ○ (지원액) 의료기관 등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액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품목별 지급기준금액 한도 내 * 의료비지원심의위원회(건보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 결정 후 지원 ○ (지원기간) 발생일부터 '32.10.28.까지 발생한 비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033-736-3330, 33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지원 (法제59조, 令제25조)	○ (목적) 참사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 의료기관 검사·치료 비용 지원 * 의료지원금(치료비) 지원 내용 및 절차와 동일 ○ (지원기간) 발생일부터 '32.10.28.까지 발생한 비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033-736-3330, 33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심리상담 등 (法제58조, 令제24조)	○ (목적)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 ○ (실시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트라우마센터(국가, 권역) 등을 통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트라우마 회복프로그램 등 제공 ○ (문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가능 * (대표번호) 1577-0199(24시간 운영)																								
법률지원 (法제63조, 令제31조)	○ (목적) 피해자 인정신청 등 피해 구제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법률상담: 기부금 배분, 상속, 손해배상, 2차 가해 관련 고소장 작성, 기타 피해 구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 소송대리: 법령에 규정한 대상 분야의 민사소송 대리 및 관련 소송비용 지원 * 다만, 국가, 공공기관 대상 소송(행정소송 등) 등은 지원 제외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1093/1074)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치유휴직 (法제60·61조, 令제26·27조)	○ (목적) 근로자인 피해자가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해 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지원 ○ (지원내용) - 6개월 이내 치유휴직 부여(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는 경우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자,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신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25.5.11. ~ '28.9.16.)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업무안내] - [사회재난실] - [10·29이태원참사피해자지원] - [피해지원] 세부 안내사항 게시

2. 신청 방법

① 피해자 인정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피해자 인정신청 기간은 '28. 3. 16.까지입니다.

② 신청 기간에 외국체류 중일 때 신청을 못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으며,
- 기존에 제출한 증빙 서류 외에 추가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53조(재심의) ① 제52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피해자 인정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FAX 및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 도착한 서류는 익일 접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장소 및 연락처 〉

- ▶ **(직접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안내동 1층 내 민원실
※ 월~금 09:30~17:30(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전화) 02-2100-4043, 4057
-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 ▶ **(FAX)** 02-2100-4053
- ▶ **(이메일)** itwsupport@korea.kr

3. 제출 서류

① 피해자 인정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인정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또는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피해자 인정 신청서(P15 [붙임 1](#) 참고)
2. 피해상황기술서(P18 [붙임 2](#) 참고)
3. 피해자 인정을 위한 증빙 서류(아래 박스 예시 참고)
4. 대리 신청 시 위임장(P19 [붙임 3](#) 참고,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예시) >

□ 경제적 피해 관련

① 사업장 운영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시) 휴·폐업사실증명원

나. 월별 매출액 자료*('21.11월~'23.10월)

* 국세청 홈택스 월별 매출자료(신용카드, 제로페이, 판매 대행 매출액 포함),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자료

② 근로 활동자

가. 근로계약서(사업장 명칭, 주소 포함) 사본, 출·퇴근 기록부, 근무대장, 사업주 진술서(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 등 기재) 등

나. 임금 감소 : 월별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22.8월~'23.4월), 체불확인서 등

다. 비자발적 퇴사 :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 및 참사 현장에서 계속 근로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실직 또는 이직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고용 24 포털 내 조회) 또는 실직 또는 이직 관련 사업주 진술(문자 포함), 동료 증언 등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실직 또는 이직 전후(이직업체 자료 포함) 월별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22.8월~'23.4월), 체불 확인서 등

□ 긴급구조 참여 관련

① 참사 시점 전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통카드 이용 내역, 날짜·위치·인물 등이 표시된 휴대폰 사진 등 참사 당시 이태원 방문 여부 관련 증빙서류

② 인명구조 자격증, 소방서 등에서 발급한 구조참여확인서 또는 구조활동 참여 목격자 진술서(자필서명 및 연락처 기재 必, 신분증사본 제출), 등

□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관련

① 참사 시점 전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통카드 이용 내역, 날짜·위치·인물 등이 표시된 휴대폰 사진 등 참사 당시 이태원 방문 여부 관련 증빙서류

② 진단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 증명서 등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 희생자와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희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② 증빙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 피해자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예시(1번)는 참고 사항으로서, 언급한 모든 분야별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상황기술서에 기술하신 피해사실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다만, 피해신청서와 피해상황기술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③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 위원회에서는 피해 인정을 위해 참사 현장 방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있었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출하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 결정하고 있으며, 피해상황기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고, 작성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단 희생자의 유가족인 경우에는 희생자와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희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④ 피해자 인정신청 후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가요?

-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위원회 사전 검토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청 후 1개월 이내로 추가 서류를 신청하셨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아울러,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신청자에게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신청 결과 문의

① 피해자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피해자 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 관련 자료를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에서 검토·확인합니다.
- 관련 자료 검토 후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 유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보완 요청(추가로 공문과 문자 발송)하고 있으며,
- 피해자 인정신청 접수일 순으로 위원회에 상정되어 관련 자료에 대한 심의를 거쳐 피해자 인정(또는 불인정) 결정을 합니다.
-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정 및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자별 등기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신청 서식은 붙임자료 참고

「이태원진상규명법」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령(법률 제20427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을 말한다) 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4호, 2026. 2. 10.,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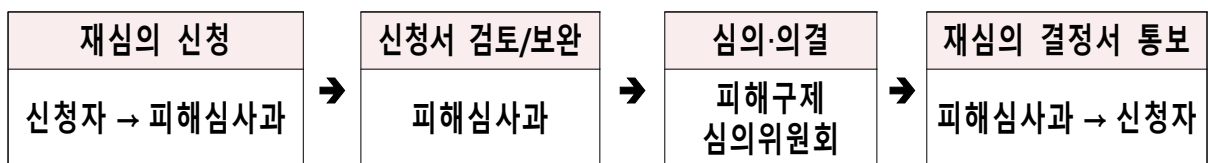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태원진상규명법」 시행령 제20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② 심의위원회는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② 피해자 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심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 하며, 필요시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진상규명법」 제53조(재심의)

- ① 제52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기타 문의

① 피해자인정 신청서 내용 중에서 피해자 인정 / 지원금 지급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 인정 신청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항목이며, 지원금 지급은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전제하에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항목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 인정신청 시에는 피해자 인정란에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원금 지급은 피해자 인정이 결정된 이후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피해자인정 신청서에 피해 유형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형 중 신청자가 해당하는 부분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나목은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유형>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중복 가능)

- ①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②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음식점, 판매점 등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 ③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위 ①, ②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Ⅲ. 붙임 자료

붙임 1

피해자 인정 신청서

“ ” 표시 필수 기재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피해자 인정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6개월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 유 형	[]유가족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② 희생자와의 관계 의	
③ 희생자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④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신청액	금액 원정(₩)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⑥ 지원항목 및 금액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지원항목 및 금액(의연금은 제외하고 기재)	
	지원항목 및 금액: 원정(₩)	

본인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응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자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희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 표시 필수 기재

피해상황 기술서

※ 해당되는 []에 √ 표를 합니다.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 유형	[]유가족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② 희생자와의 관계		의	
③ 희생자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④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피해 상황 기술 시 참고 사항(예시) >

- 1) 참사 당시 피해 상황 및 현장에 있었던 사실(친구와 만남, 사업장 운영 및 근로활동 등) 또는 희생자와의 관계
- 2) 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 진술(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
- 3) 피해로 인한 현재 상황(매출 부진 지속, 실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치료 중) 등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피해상황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본인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상황 기술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	의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290 | 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사항	민원명	발급통수	용도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국세청 매출액 자료 조회 방법

□ 월별 매출액 자료('21.11월~'23.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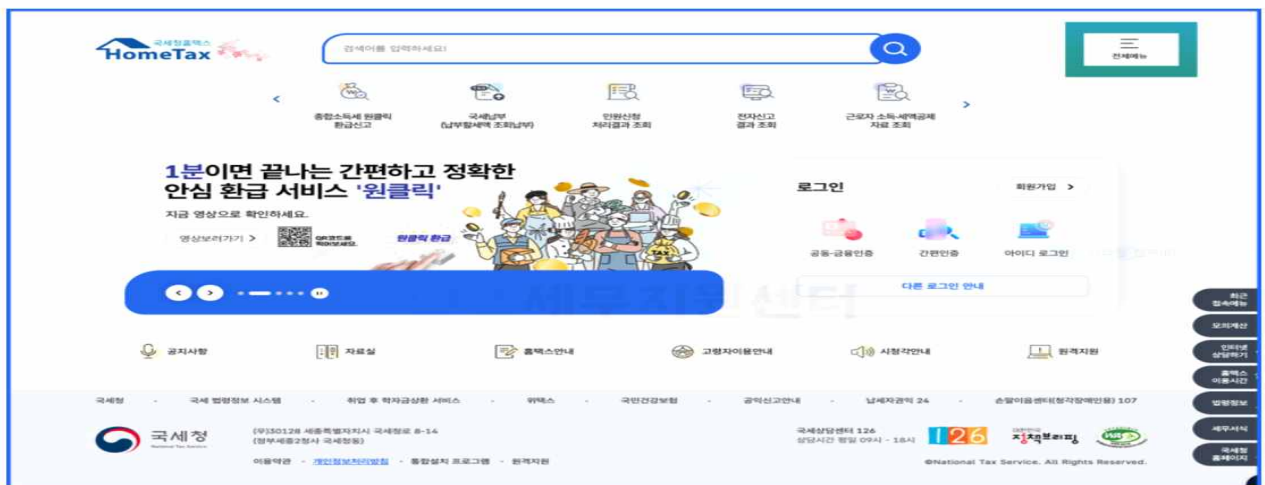
□ 매출액 자료는 국세청 신용카드 및 카드사(VAN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함

○ 사업장에 따라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액* 추가 제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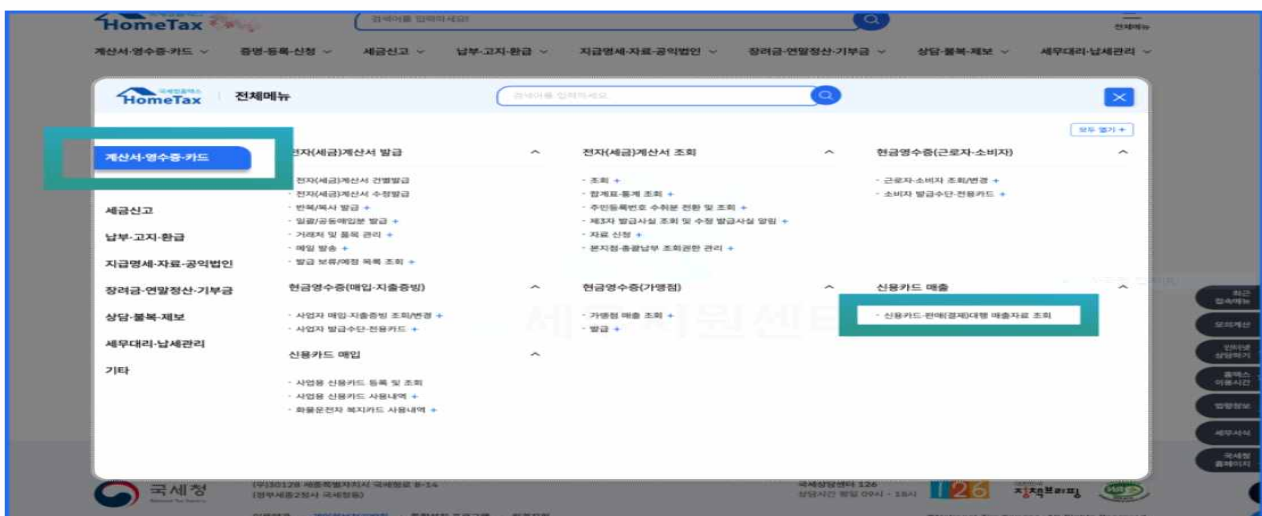
* (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 → 내역조회

□ 국세청 홈택스 매출액 조회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 주세요. 로그인 후 “전체메뉴”를 눌러주세요.



②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 매출 자료 조회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 ③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함께 명시되게 결제 연도별('21년~'23년 각 각 1분기~4분기)로 조회하여 캡처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의) 엑셀 내려받기 파일 제출 불가

매출자료구분별 합계조회(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
엑셀 내려받기

순번	승인분기	자료구분	건수	매출액합계
합계				
1	2024-	신용카드 자료		
2	2024-	신용카드 자료		
3	2024-	신용카드 자료		
4	2024-	신용카드 자료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자료 조회(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
엑셀 내려받기

순번	승인년월	자료구분	건수	매출액계	신용카드/기타결제	구매한도/카드매출	비과세금액
합계						0	0
1	202-	신용카드 자료				0	0
2	202-	신용카드 자료				0	0
3	202-	신용카드 자료				0	0
4	202-	신용카드 자료				0	0
5	202-	신용카드 자료				0	0
6	202-	신용카드 자료				0	0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
엑셀 내려받기

순번	승인년월	건수	매출금액	판매(결제)대행업체 상호
합계				
2	202-			주식회사
3	202-			주식회사
4	202-			지마켓
5	202-			주식회사
6	202-			지마켓
7	202-			주식회사
8	202-			주식회사
9	202-			주식회사
10	202-			주식회사
11	202-			주식회사

1
총11건(1/1)

붙임 5

사업장 운영자 경제적 피해 증빙[예시]

[유형1 : 국세청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화면 캡처]

□ 월별 매출액 자료('21.11월~'23.10월)

신용카드 /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 신용카드, 제로페이 등 다양한 매출자료로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제외된 자료입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매전용카드 결제금액은 전용구분카드 결제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판매(결제)대행업체로부터 수집한 매출자료로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신용카드 자료 및 판매(결제)대행 자료는 카드사, 판매(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사업자의 세부자료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매출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

사업장등록번호

연도 2022 년 1분기 4분기

조회

매출자료구분별 합계조회(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

순번	순번분기	자료구분	건수	매출액합계
합계				
1		신용카드 자료		
2		판매(결제)대행 자료		
3		신용카드 자료		
4		판매(결제)대행 자료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자료 조회(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

순번	순번년월	자료구분	건수	매출액합계	신용카드 합계	구매전용카드 합계	비과세금액
합계						0	0
1	2022-08	신용카드 자료			0	0	0
2	2022-09	신용카드 자료			0	0	0
3	2022-10	신용카드 자료			0	0	0
4	2022-11	신용카드 자료			0	0	0
5	2022-12	신용카드 자료			0	0	0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

순번	순번년월	건수	매출액합계	판매(결제)대행업체 상호
합계				
1	2022-09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2	2022-11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3	2022-11			네이버페이(년월) 주식회사
4	2022-12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5	2022-12			네이버페이(년월) 주식회사

1 총5건(1/1)

이용안내

- 신용카드 자료는 매월 15일경에 직전월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 현금카드 자료는 부가세 신고일에 직전분기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 1~3일 매출자료 : 4일 10일경 제공 4~6일 매출자료 : 7일 10일경 제공
- 7~9일 매출자료 : 10일 10일경 제공 10~12일 매출자료 : 11일 10일경 제공
-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부가가치세 제26조제 4항 제 2호를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제공수일 후 상속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 1~3일 매출자료 : 4일 17일경 제공 예정 4~6일 매출자료 : 7일 17일경 제공 예정
- 7~9일 매출자료 : 10일 17일경 제공 예정 10~12일 매출자료 : 11일 17일경 제공 예정

국세청 국세 행정정보 시스템 허접 후 전자공표 서비스 위택스 국민건강보험 공여신고안내 납세자관리 24 손익자료관리(전자공표) 107



(주)126 세무회계대행사 국세청로 8-16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빌딩)

국세청빌딩 126
영업시간 평일 09시 ~ 18시

126

대한민국
국(국)세(세)무(무)청(청)



[유형2 : 국세청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 월별 매출액 자료('21.11월~'23.10월)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결제년도	2021 년	분기	1 - 2
---------	--	--------	--	------	--------	----	-------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매출자료구분별 합계조회

순번	승인분기	자료구분	건수	매출액합계
합계				
1	2021-1분기	신용카드 자료		
2	2021-2분기	신용카드 자료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페이 매출자료 조회(은누리)신용카드, 제로

순번	승인년월	자료구분	건수	매출액계	신용카드 결제	구매전용카드결제	비과세금액
합계						0	0
1	2021-01	신용카드 자료				0	0
2	2021-02	신용카드 자료				0	0
3	2021-03	신용카드 자료				0	0
4	2021-04	신용카드 자료				0	0
5	2021-05	신용카드 자료				0	0
6	2021-06	신용카드 자료				0	0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대행 매출자료 조회(결제)판매

순번	승인년월	건수	매출금액	판매(결제)대행업체 상호
합계		0	0	

[유형3 : VAN사(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참고 내역 조회]

□ 월별 매출액 자료('21.11월~'23.10월)

2023-07-26 10:44

From: 02

To : 02-

Page: 003/003

부가세 참고 내역 조회

		가맹점명			
		점화번호			
사업자번호		조회년월	2021-01 ~ 2021-12	출력일자	
대표자명		가맹점주소			
202107	전수	승인금액	과세	비과세	통사료
비씨카드				0	0
현대카드				0	0
하나카드				0	0
국민카드				0	0
외환카드				0	0
롯데카드				0	0
신한카드				0	0
삼성카드				0	0
한글IC(직불포)				0	0
한글영수증				0	0
선불(티머니)				0	0
상품권				0	0
소계				0	0
202108	전수	승인금액	과세	비과세	통사료
비씨카드				0	0
현대카드				0	0
하나카드				0	0
국민카드				0	0
외환카드				0	0
롯데카드				0	0
신한카드				0	0
삼성카드				0	0
한글IC(직불포)				0	0
한글영수증				0	0
선불(티머니)				0	0
상품권				0	0
소계				0	0
202109	전수	승인금액	과세	비과세	통사료
비씨카드				0	0
현대카드				0	0
하나카드				0	0
국민카드				0	0
외환카드				0	0
롯데카드				0	0
신한카드				0	0
삼성카드				0	0
한글IC(직불포)				0	0
한글영수증				0	0
선불(티머니)				0	0
상품권				0	0
소계				0	0
202110	전수	승인금액	과세	비과세	통사료
비씨카드				0	0
현대카드				0	0
하나카드				0	0
국민카드				0	0
외환카드				0	0
롯데카드				0	0
신한카드				0	0
삼성카드				0	0
한글IC(직불포)				0	0
한글영수증				0	0
선불(티머니)				0	0
상품권				0	0
소계				0	0
202111	전수	승인금액	과세	비과세	통사료
비씨카드				0	0
현대카드				0	0
하나카드				0	0
국민카드				0	0
외환카드				0	0
롯데카드				0	0
신한카드				0	0
삼성카드				0	0
한글IC(직불포)				0	0
한글영수증				0	0
선불(티머니)				0	0
상품권				0	0
소계				0	0
202112	전수	승인금액	과세	비과세	통사료
비씨카드				0	0
현대카드				0	0
하나카드				0	0
국민카드				0	0
외환카드				0	0
롯데카드				0	0
신한카드				0	0
삼성카드				0	0
한글IC(직불포)				0	0
한글영수증				0	0
선불(티머니)				0	0
상품권				0	0
소계				0	0

* 부가세 자료는 (주)티머니모빌리티 신용카드 조회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이며, 카드사의 조회 자료와 다를 수 있음
 * 한글영수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내용으로 확인 요망(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사용)

붙임 6

매출액 자료 불인정 유형[예시]

[유형1 : 사업장 매출장 / 개별 증빙으로 사실 관계 확인 불가]

매 출 장			
기간: 2023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회사명: []		전체 /	
번호	일 자	적 요	전체
			단일거래
			매출 공 급 가 액
50002	2023/06/30	1-6월 현금매출	현금매출
		합 계 매출: 1 건	
		원 계 매출: 1 건	
		분기 누계 매출: 1 건	
		반기 누계 매출: 1 건	
		누 계 매출: 1 건	
50003	2023/08/31	여기어때매출-8월	(주)여기어때컴퍼니
		합 계 매출: 1 건	
		원 계 매출: 1 건	
		누 계 매출: 2 건	
50001	2023/09/25	현금영수증매출	현금영수증매출
		합 계 매출: 1 건	
		원 계 매출: 1 건	
		분기 누계 매출: 2 건	
		누 계 매출: 3 건	
50004	2023/10/31	여기어때매출-10월	(주)여기어때컴퍼니
50005	2023/10/31	네이버카드매출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합 계 매출: 2 건	
		원 계 매출: 2 건	
		누 계 매출: 5 건	
50001	2023/12/30	현금영수증매출	현금영수증매출
50004	2023/12/31	여기어때매출-12월	(주)여기어때컴퍼니
50005	2023/12/31	네이버카드매출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50006	2023/12/31	기타매출_12월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50007	2023/12/31		
		합 계 매출: 5 건	
		원 계 매출: 5 건	
		분기 누계 매출: 7 건	
		반기 누계 매출: 9 건	
		누 계 매출: 10 건	

[유형2 : 국세청 엑셀 내려받기 자료 /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불가]

순번	송입년월	자료구분	전수	매출액계	신용카드 결제	무단전용카드 결제	비과세금액
		합계				0	0
1	2024-01	신용카드 자료				0	0
2	2024-02	신용카드 자료				0	0
3	2024-03	신용카드 자료				0	0
4	2024-04	신용카드 자료				0	0
5	2024-05	신용카드 자료				0	0
6	2024-06	신용카드 자료				0	0
7	2024-07	신용카드 자료				0	0
8	2024-08	신용카드 자료				0	0
9	2024-09	신용카드 자료				0	0
10	2024-10	신용카드 자료				0	0
11	2024-11	신용카드 자료				0	0
12	2024-12	신용카드 자료				0	0

[유형3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월별 매출액 확인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3. 2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1장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2021 년 제 1 기 (01 월 01 일 ~ 06 월 30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1 신고 내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10/100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10/100	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10/100	0	
	영세 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0/100		
		기 타	(6)	0	0/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0		0	
	대 손 세 액 가 감		(8)			0	
	합 계		(9)		㉞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수출기업 수입 납부유예	(10-1)			0	
		고정자산 매입	(11)	0		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0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0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10)-(10-1)+(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6)			0	
	차 감 계 (15)-(16)		(17)		㉟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㉞-매입세액㉟)					㉡		
경감 ·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	0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0
예 정 고 지 세 액				(22)		㉥	0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23)		㉦	0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24)		㉧	0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납부세액				(25)		㉨	0
가 산 세 액 계				(26)		㉩	0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7)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0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계좌번호		
③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 사유		
④ 영 세 율 상 호 주 의		여[]부[☒]	적용구분		업종	해당국가	
⑤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업 태	종 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021년 07월 17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용산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8) 도매 및 소매	가족 및 모피 의복 소매업						
(29)							
(30)							
(31) 수입금액 제외							
(32) 합 계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붙임 7

근로 활동자 경제적 피해 증빙(예시)

□ [소득감소] 월별 급여 명세서('22.8월~'23.4월)

- 사업장에서 발급한 월별 급여명세서 또는 본인의 급여통장 사본

지급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2022년 09월 급여 명세서

성명 조

지 내 역	기본급	연차수당	월아간수당	월시간외 수당	추가 연장수당	추가 야간수당
	직급수당	민생티브	휴일근무 및 기타수당 등			
						지급한계액
공 제 내 역	국민연금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건강보험장산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장산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한계액	차인지급액
기 타 내 역	통일장상근무일	통일연장근무시간	유휴연장근무일	연차		

사업장 : (주)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기타] 실직 및 이직 등 비자발적 퇴사

- 10·29이태원참사 관련 매출 부진 등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직 (예시 : 사업장 폐업, 해고, 임금 체불, 권고사직 등)
- 이태원참사 현장 인근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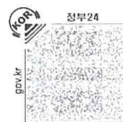
< 실직 또는 이직 관련 확인 가능 자료 >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고용24 포털 내 조회) 또는 실직 또는 이직 관련 사업주 진술(문자 포함), 동료 증언 등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실직 또는 이직 전후(이직업체 자료 포함) 월별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22.8월~'23.4월), 체불 확인서 등

[근로활동 및 실직 증빙]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문서확인번호 : 1750-2336-0803-3667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 1)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조회기간	2022/01/01 ~ 2022/12/31			
일련번호	사업장 명칭	취득/전근일	상설일	
1	주식회사			
※ 본 자료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 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자격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6월 18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직인생략)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